



공증  
인가 **법무법인 김해 & 세계**

전화 : 323-5670

FAX : 323-5070

[제33호 서식]

등부 2021 년 제 3171 호

**인 증 서**

# 재단 이사회 회의록



회의일자	2021년 11월 25일	회의장소	재단 회의실
회의시간	11:00 ~12:00 (1시간)	구 분	정기 ( O ) / 임시 ( )
출석현황	이사 재적: 5 명 / 참석: 5 명		

이사회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인정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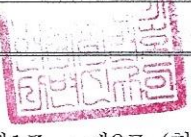
회의안건	정관(소재지, 주요안건) 변경 및 감사 연임 의결
회의내용	<p>1. 성원보고 및 개회 선언 이번 정기이사회는 재적이사 5명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이사회를 개최함.</p> <p>2. 의안보고 및 채택 이번 이사회 안건은 총 3가지 사안으로 제1호는 소재지 변경 등으로 인한 정관 변경과 제2호는 감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연장 의결 그리고 기타 안건으로 홈페이지 개설 건에 대하여 주요 안건으로 채택함 (윤보원 감사: 임기만료로 인한 연임을 이사 만장일치로 의결함)</p> <p>3. 전차회의록 처리 김택근 이사의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하고 최우식 이사장 이하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함</p> <p>4. 개설된 홈페이지에 대한 시연</p> <p>5. 기타 토의 사항 이사회 임기 내용에 검토 필요 고문제도의 활용 필요 재단 및 휴아인의원에 대한 인력 충원 필요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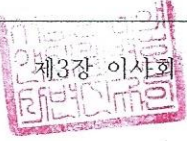
2021년 11월 25일

참여 이사회 명단					
직 책	성 명	서 명	직 책	성 명	서 명
이사장	최 우 식		이 사	김 태 규	
이 사	허 상 근		이 사	김 택 근	
이 사	허 만 록				

# 재단법인 정석연구재단 정관 신·구 조문 대비표

- 시행일자 :

현 행	개 정(안)	개정 사유
제1장 총칙 제1조 - 제2조 (생략)	 제1장 총칙 제1조 - 제3조 (현행과 같음)	
제1장 총칙 제3조(사무소 및 부설의료기관의 소재지) ①법인의 주사무소는 “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-59, 김해 의생명센터 테크노타운 705호”에 둔 다. ② 법인에서 운영하는 부설의료기관은 “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-59, 김해 의생명센 터 테크노타운 401호”에 둔다.	제1장 총칙 제3조(사무소 및 부설의료기관의 소재지) ①법인의 주사무소는 “ <u>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614-19번지 골든빌딩 503호</u> ”에 둔다. ②법인에서 운영하는 부설의료기관은“ <u>경상남도 김 해시 부원동614-19번지 골든빌딩 506호</u> ”에 둔다.	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주소 변경
제1장 총칙 제4조(사업)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-4. (생략) 5.<신설> 5.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.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	제1장 총칙 제4조(사업)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-4. (현행과 같음) 5. <u>지역 교육기관과 연계 또는 단독 교육사업</u> 6. <u>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</u> 7. <u>목적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</u>	교육사업 내용 추가
제1장 총칙 제5조(무상이익의 원칙) 법인이 제4조의 목적사업 으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에는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	제1장 총칙 제5조 <삭제>	제5장 수익사업 내용과 상충되어 삭제
제6조 (생략)	제6조 (현행과 같음)	
제1장 총칙 제7조(정치활동의 금지) 법인 및 법인의 대표자는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·지원하는 등 정 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	제1장 총칙 제7조 <삭제>	필수조항이 아니므로 삭제
제8조 - 제17조 (생략)	제8조 - 제17조 (현행과 같음)	
제3장 이사회 제18조(이사회 소집) ① - ② (생략) ③ <u>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</u>	제3장 이사회 제18조(이사회 소집) ① -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</u>	긴급사항에 대한 이사회 소집 추가

현 행	개 정(안)	개정 사유
<p>우편 등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&lt;삽입&gt; ④ (생략)</p>	<p>우편 등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내용을 통보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④ (현행과 같음)</p>	
<p>제3장 이사회 제19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. 제1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</p>	<p>제19조 &lt;삭제&gt;</p> 	<p>필수조항이 아니므로 삭제</p>
<p>제20조 - 제21조 (생략)</p>	<p>제20조 - 제21조 (현행과 같음)</p>	
<p>제3장 이사회 제22조(서면결의 허용) ①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</p>	<p>제3장 이사회 제22조(서면 등 결의) ① 의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서면결의에 붙일 수 있다. ②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온라인 방법을 통한 회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, 온라인방법을 통한 회의의 의결권 행사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</p>	<p>서면 결의 대한 내용 수정</p>
<p>제23조 - 제39조 (생략)</p>	<p>제23조 - 제39조 (현행과 같음)</p>	
<p>부 칙 제1조 - 제2조 (생략)</p>	<p>부 칙 제1조 - 제2조 (현행과 같음)</p>	<p>0</p>
<p>부 칙 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.</p>	<p>부 칙 제3조 &lt;삭제&gt;</p>	<p>법인설립시 조항이므로 삭제</p>

# 공증 인가 법무법인 김해 & 세계

전화 : 323-5670  
FAX : 323-5070

[제37호 서식]

등부	2021 년	제 3171 호
인 증		
위 재단법인 정석연구재단-----		
2021년 11월 25일자 이사회회의록에 대하여-----		
(이사) 최우식, 김태규, 허상근, 허만록 등의 대리인 겸 (이사) 김택근		
본인은 -----		
-----		
-----		
-----		
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		
진술하고, 그 기명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.		
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		
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.		
2021년 11월 29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.		
<b>공증 인가 법무법인 김해 &amp; 세계</b>		
소속 창원지방검찰청		
김해시 호계로422번길 12 (부원동)		
공증담당변호사 <b>경 식</b> 인		
아 래		
1. 진술서		
2. 주주명부		
3. 법인등기부등본		
4. 정 관		
5. 주민등록증		
6.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증명서		